

산업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결의문

심 사 보 고 서

1993. 4. 8

총무사회산업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3년 4월 7일, 이현택의원외 13명

나. 회부일자 : 1993년 4월 8일

다. 상정일자 : 제23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2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현택 위원)

가. 제안이유

관내 신평동 642-10번지 일원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할 경우 이지역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

나. 주요골자

- 산업폐기물 소각장 설치예정지는 주거밀집지역과 인접
- 예상되는 교통의 혼잡과 혐오시설의 집중화에 따른 공해의 심화 등으로 지역개발 저해
- 도심순환도로의 경유지로 낙동대교가 위치하게 될 서부산의 관문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민들의 휴식 및 녹지공단 등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설치반대
-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철새도래지가 인접해 있어 위치선정 재고
- 신평·장림공단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은 현재 가동 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법정공단이라는 이유로 별도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것은 부당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습

4. 토론 요지 :

〈찬성토론 : 한정동위원〉

날로 증가하는 산업폐기물의 다량화로 기업의 애로는 공감하지만 현재 소각장 설치 예정지는 주거밀집지역과 인접해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각장 설치반대하고, 반대결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조속히 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.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10명 전원찬성)